

선택적 근로시간제 추가 서면합의서

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김명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근로자대표 제동국은 2019.7.14.부로 시행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상호 합의한다.

- 다 음 -

제1조(적용대상)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대상을 1차 부서장 및 2차 부서장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. 단, 직할부서장은 제외한다. 또한 실험실 관리직원의 경우 신청한 직원에 한하여 1차 부서장 승인 후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적용할 수 있다.

제2조(기타사항)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서 및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한다.

제3조(유효기간) ①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서와 본 추가 서면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20년 7월 13일까지로 한다. 단, 양 당사자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변경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.

②양 당사자 중 일방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합의서가 확정될 때 까지 동 합의서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다.

제4조(시행일) 본 선택적 근로시간제 추가 서면합의서 내용은 2020년 1월 5일부로 시행한다.

2019. 12. 26.

한국전자통신연구원

원장 김명준



한국전자통신연구원

근로자대표 제동국

